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58 발의연월일 : 2025. 4. 18.

발 의 자: 김도읍・박상웅・구자근

박충권 · 김민전 · 김소희

김성원 • 권영진 • 김장겸

정점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동물진료가 증가하고 있으나,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초진·재진 진찰, 진찰에 대한 상담, 입원,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가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0조제1항및 제41조 등).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은 제외한다.
- 1. 초진 · 재진 진찰, 진찰에 대한 상담
- 2. 입원
- 3.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백신의 접종
- 4.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

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제1호·제7호 및 제7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
- 2.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3.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 ----- 개 정 안

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
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, 입원, 예방접종,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수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한다.

제20조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)
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진료업의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은 제외한다.

- 1. 초진·재진 진찰, 진찰에 대한 상담
- <u>2. 입원</u>
- 3.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백신의 접종
- 4.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 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 한 진료
- ② (현행과 같음)

② (생략)

제41조(과태료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1의2. ~ 6의5. (생 략)
- 7.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

 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

 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

 아니한 자

제41조(과대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
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
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
 으로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
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
- 2.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3.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<u>③</u> ------

<삭 제>

1의2. ~ 6의5. (현행과 같음) 사용 제 <삭 제>

<u>7의2.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</u> <u><삭 제></u>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8. • 9. (생략)

③ (생략)

8. • 9. (현행과 같음)
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